

⑥ 特別檢事制

○ 現行, 民主黨: 없음,

○ 民主黨: 195

第 95 條 ① 彈劾對象者의 不法과 不正, 기타 一般搜查機關

이 搜查·訴追하기에 適當하지 아니한 事件의 수사와 소추를 위하여 特別檢事를 들 수 있다.

② 特別檢事는 獨立하여 그 職務를 處理한다.

③ 特別檢事의 選任, 職務範圍 기타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.

○ 特別檢事制度 (民主黨案)

— 우리나라는 大陸式 檢察 組織으로서 어느정도 職務의 獨立性이

보장되어 있고

— 特別檢事도 결국 大統領이 選任하게 되므로

一般檢事와 큰 차이가 없게 될 것임.

○ 特別檢事制 新設이 취지는 檢察의 中立性 내지 獨立性에 대한 기본으로 高位公職者, 大型事件 搜查를 위하여 基로 檢察과 별개에 搜查·訴追權을 둔다는 것이나,

○ 이 제도를 들 美國의 경우는 法務長官이 特別檢事를 任命하도록 하여 188 까지의 限時法으로 應용한 것이나 一般的인 外國의 例가 없고,

○ 檢察과의 二重機能으로 셋이 공간을 占據하거나 現在의 司法구조로 보아 特別檢事의 適當이 제대로 되지 기본

— 特別檢事 適當이 정우에도 수사를 爲하여 基로 搜查機關의 活用은 불가피하며

— 獨自的인 수사작용을 인정할 경우 對방후의 反民特權과 같이 基로 搜查機關의 權限과 混雜을 占據할 우려가 있음